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2. 1 선고 2022가단1069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소재윤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C(D생)과 피고들 사이에 각 2021. 11.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C에게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접수 제1100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4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이 중소기업은행과 F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에 기하여 E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들로부터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각 대출		
연번	보증일시 및 보증기한	보증번호	보증원금(원)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금액
1	2013. 5. 30.	G	255,000,000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300,000,000원
2	2015. 2. 11.	H	72,000,000	F은행	일반자금	90,000,000원
3	2017. 3. 20.	I	180,000,000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200,000,000원
4	2020. 1. 31.	J	153,000,000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180,000,000원

나.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에 E의 대표자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E은 2021. 11. 11.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의 중소기업은행과 F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신용보증약정	채권기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회수금	대위변제금 잔액
제1보증	중소기업은행	2022. 1. 10.	256,790,183원	2,090,740원	254,699,443원
제2보증	F은행	2022. 2. 21.	59,235,998원		59,235,998원

제3보증	중소기업은행	2022. 1. 10.	171,542,718원		171,542,718원
제4보증			154,071,611원		154,071,611원
합계			641,640,510원		639,549,770원

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E과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22. 4. 11.자를 기준으로 642,596,171원(= 제1보증 대위변제금잔액 254,699,443원 + 제2보증 대위변제금 59,235,998원 + 제3보증 대위변제금 171,542,718원 + 제4보증 대위변제금 154,071,611원 + 제1보증 확정손해금 1원+제2보증 추가보증료 51,310원 + 대지급금 2,995,090원)에 이른다.

마. 한편 C은 2021. 11. 5.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와 사이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B와 사이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3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21. 11. 8.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C의 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적극재산은 120,692,975원이고, 소극재산은 796,381,197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구분	내역	가액(원)
적극재산	천안시 동남구 K 전 1861㎡ 중 1/4 지분	26,007,475
	충북 보은군 L 답 531㎡	59,365,800
	충북 보은군 M 답 104㎡	11,627,200
	충북 보은군 N 전 729㎡	23,692,500
합계		120,692,975
소극재산	이 사건 구상금 채무	642,596,171
	O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82,008,805

	주식회사 P에 대한 채무	20,711,693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	20,415,222
	Q조합에 대한 채무	30,649,306
합계		796,381,19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C과 피고들이 2021. 11. 5.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2021. 11. 11. E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22. 1. 10.과 같은 해 2. 21. E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보았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들은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로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나 C이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고 주장한다.
-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 3)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C과 형제남매 관계로 C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21. 8. 17.경부터 C은 피고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당시에 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친인척 사이의 금전적 원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C의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C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재원

별지